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1일, 신성범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성범의원)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

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1.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를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으로 변경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빈집 관련 정보의 관리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축·운영 주체

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2.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요건에서 거주요건을 삭제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실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① 숙박업과의 차이가 모호해지는 측면 ② 민박업 난립으로 인한 농촌 지역주민의 주거여건 및 농촌 자연경관의 훼손 가능성 ③ 기존 농어촌민박과의 경쟁 발생 ④ 숙박업계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함.

또한 농어촌민박 운영자의 부재에 따른 민박 부실관리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빈집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전면적인 실거주요건 삭제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